

중소기업 기준(요약)

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.

1 규모기준(외형적 판단기준) :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

① 업종별 규모기준 :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

〈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,3) 〉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	분류기호	중소기업 (평균매출액)	소기업 (평균매출액)
제조업 (6개업종)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1,500억원 이하	120억원 이하
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80억원 이하
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120억원 이하
	1차 금속 제조업	C24		
	전기장비 제조업	C28		
	가구 제조업	C32		
농업, 임업 및 어업		A	1,000억원 이하	80억원 이하
광업		B		120억원 이하
제조업 (12개업종)	식료품 제조업	C10		80억원 이하
	담배 제조업	C12		120억원 이하
	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	C13		80억원 이하
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(가구 제조업 제외)	C16		120억원 이하
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80억원 이하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	120억원 이하
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80억원 이하
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C25		120억원 이하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80억원 이하
	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120억원 이하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80억원 이하
	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50억원 이하
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	D		120억원 이하
수도업		E36		80억원 이하
건설업		F		50억원 이하
도매 및 소매업		G		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	분류기호	중소기업 (평균매출액)	소기업 (평균매출액)
제조업 (6개업종)	음료 제조업	C11	800억원 이하	120억원 이하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80억원 이하
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120억원 이하
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80억원 이하
	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 제외)		E (E36 제외)		30억원 이하
운수 및 창고업		H		80억원 이하
정보통신업		J		50억원 이하
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		C34	600억원 이하	10억원 이하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	M		30억원 이하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(임대업 제외)		N (N76 제외)		30억원 이하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	Q		10억원 이하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	R		30억원 이하
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	S		10억원 이하
숙박 및 음식점업		I	400억원 이하	10억원 이하
금융 및 보험업		K		80억원 이하
부동산업		L		30억원 이하
임대업		N76		30억원 이하
교육 서비스업		P		10억원 이하
※비고 :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				
자동차용 부품 의자 제조업		C30393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	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
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		C31202		
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		C31322		

Tip

주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(통계청)의 대분류 기준으로(제조업은 중분류) 구분하여 판단합니다.

② **상한기준** :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,000억 원 미만일 것

2 독립성 기준(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) :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

-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
- ② 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, 비영리법인 등 제외)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



-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

※ 관계기업 :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·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
 ※ 단,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(연합회), 사회적 협동조합(연합회)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소비자생활협동조합(전국연합회), 중소기업(사업)협동조합(연합회)은 관계기업제도(평균매출액등 합산) 적용하지 않음

3 2015년 이후 달라진 점

- ① **업종별 규모기준** : (중전)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/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→ (개정) 매출액 단일 기준
- ② **대상 확대**
 -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,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)
 -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)
- ③ **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(유예가능으로 변경)**
 -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호)
 -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)
- ④ **관계기업 판단시점**
 -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,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 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)
- ⑤ **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**
 -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주 업종 분류는 통계법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바,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'17.7.1.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, 별표3)
- ⑥ **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**
 -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만 중소기업자에서 제외하였으나,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)